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1460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2023. 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제명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3조)
- 나. 2021. 1.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개정되고 일부 조항 이동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조례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6]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의: 일괄정비 대상 조례 소관부서 협의 완료
- 라. 기 타

- 1) 입법안 [별첨 1]
- 2) 입법예고 결과: 미실시 [별첨 3]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 3)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4]
- 6)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5]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명 개정 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관련법규 인용조문 등을 일괄정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한동희 (02-2282-8649)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별첨 4】**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6			
정책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한동희	전화번호	02-2282-864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정원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9월 05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9월 06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9월 06일</p>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 관	성명	한동희 (02-2282-864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규정함. -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심의 안건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 각목의 “교육복지사업”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안정적이고 전문성있는 지원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 개정 시에 검토하길 바람. 					원안 동의

【별첨 6】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u>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u> 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7872호, 2021. 1.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78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개정 2016.12.29.>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나.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다.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마.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바.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사.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아.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차.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
타.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